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일상생활/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/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수급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함에 있어 관련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하고, 문서화를 통하여 수급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에 있다.
- ② 사용자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인지 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.
- ③ 계약기간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,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.
-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,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능력이 없으며, 보호자가 부재인 상황의 경우 서명은 공란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.
- ⑤ 본 사업소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의 경우,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원 등의 시설입소 시에 회수/부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계약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2.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,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,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3.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,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)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나)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
 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) 수급자의 건강/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- 나)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 - 다)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/입소 또는 사망 등의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이를 즉시 본 사업소에 통지할 의무
 - 라)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본 사업소에 통지할 의무

마)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/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

- ⑦ 수급자는 제3조제4항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며, 구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다음 표와 같다.

연 이용한도	구분	공단부담률	본인부담률	비 고
1,600,000원	일반	85%	15%	100% 중 85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%는 본인 부담함
	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	91%	9%	100% 중 91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%는 본인 부담함
	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	94%	6%	100% 중 94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%는 본인 부담함
	기초수급자	100%	0%	100% 중 100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

- ⑧ 계약의 해제의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본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(또는 신원인수인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가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나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
 - 다)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수급자(또는 신원인수인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